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12

발의연월일: 2025. 6. 11.

발 의 자:최민희·권향엽·김문수

김 윤 · 김 현 · 박지원

박해철 · 송재봉 · 이광희

이병진 · 장종태 · 정동영

조인철 · 황정아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하면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고발 절차는 증거수집, 사실관계 판단 등 장기간이 소요 되고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 일반적인경우로 확대하고, 불출석 등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 2.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 3.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 4.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자
- 2. 동행명령을 거부한 자
- 3.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자
- 4.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 1.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을 한 자
- 2. 허위의 감정을 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위원회가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고발하기로 한 자에 대하여 국회사무총장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①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	
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	
령할 수 있다.	<u>.</u>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5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2.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3.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4.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 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 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 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자
- 2. 동행명령을 거부한 자
- 3.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자
- 4.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 함한다)을 한 자
- 2. 허위의 감정을 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위원회가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고발하기로 한 자에 대하여 국회사무총장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부과・징수한다.